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 법률 제1549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